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

3.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안 제30조의 8제2항제2호)

-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

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안 제37조의13제1항)

-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 사업자로 선정

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제37조의14)

-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성 보고서 작성지침을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사업자는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라.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11)

-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 알뜰폰의 제도적 기반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에서 삭제되고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제1호1), 별표 4 제2호가목 및 제6

호)

바. 상호접속등에 관한 고시 주체 정정(안 별표 4)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관련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의 기준을 고시하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제2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가목의 부분 중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자동 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이때 실시간 응답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조치의 요구, 법령 질의, 분쟁 발생 등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1) 이용자 요구사항 2)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37조의13부터 제37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3(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법 제32조의10 제3항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14(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등) ① 제37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서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제37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7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의2제3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1)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의2제3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로,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을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의2제1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전단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으로, 같은 호 전단 중 “회피가능비용”을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서목부터 무목까지를 어목부터 부목까지로 하고,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포목(중전의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4조제5 항제4호의7	350	700	1,0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8제2항제2호가
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생략)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②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2. ----- -----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u>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u>	가. ----- ----- <u>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u> ----- ----- - <u>확보. 이 경우 실시간 응답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u>

나 ~ 다. (생략)
3 ~ 4. (생략)
③ (생략)

<신설>

다만, 기술적 조치의 요구, 법령 질의, 분쟁 발생 등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1) 이용자 요구사항

2)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3(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 설>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법 제32조의10 제3항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14(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등) ① 제37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서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제37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u>법 제38조제2항</u>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u>법 제38조의2제1항</u> -- ----- ----- -----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5조제3항
· 제37조제3항 · 제38조의2제3
항 · 제39조제2항 · 제41조제2항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

가. ~ 라. (생략)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

2) (생략)

바. ~ 아.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생략)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

[별표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가. -----

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 · 제36조제2항 · 제37조제3항 · 제38조제4항 · 제39조제2항 · 제41조제2항 · 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 · 제36조제1항 · 제37조제2항 · 제38조제2항 · 제39조제3항 · 제41조제3항 ·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3. ~ 5의2. (생략)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 · 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

----- 법 제35조제3항 · 제36조제2항 · 제37조제3항 · 제38조의2제3항 · 제39조제2항 · 제41조제2항 ·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 법 제35조제2항 · 제36조제1항 · 제37조제2항 · 제38조의2제1항 · 제39조제3항 · 제41조제3항 · 제42조제3항-----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5의2. (현행과 같음)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 · 유지하는 행위

----- 법 제38조의2제3항-----
-----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

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 10. (생략)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서.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5호	350	700	1,000

부칙

<신설>

-----.

7. ~ 10. (현행과 같음)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7	350	700	1,000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5호	350	700	1,000

※ 서목부터 무목까지를 어목부터 부목까지로 변경하고, 서목을 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8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연 락 처	(044) 202 - 6771
	(044) 202 - 67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641